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4년 4월 일
발 의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장기재직공무원 및 성과·격무부서 직원의 업무효율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제23조(특별휴가) 제11항 및 제12항 신설

○ 10년 이상 재직공무원 : 특별휴가 5일

○ 20년 이상 재직공무원 : 특별휴가 10일

○ 성과·격무부서 표창 수여 공무원 : 특별휴가 3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』 제7조의3(특별휴가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간,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.

⑫ 군수는 성과 및 격무부서 근무자가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특별휴가) ① ~ ⑩(생 략)	제23조(특별휴가) ① ~ ⑩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간,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.
<신설>	⑫ 군수는 성과 및 격무부서 근무자가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3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